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·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63 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이해민·김우영·김남희

윤종군 • 이상식 • 김문수

이재강 • 양문석 • 송재봉

이광희 • 조인철 • 서왕진

김준형 · 송옥주 · 한민수

신장식 · 김재원 · 조 국

강경숙 • 박은정 • 김성환

김선민 • 황운하 • 정춘생

차규근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(OTT 등)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부가통신사업자(CP)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

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(CP)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, 국내 기간통신사업자(ISP)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(CP)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·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(CP)간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고자 함.

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4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3(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의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 용 또는 제공(이하 "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"이라 한다)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호부터"를 "제2호의2 및 제2호의 3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, 제9호부터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,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

- 2의2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·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
- 2의3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 요금, 계약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

제52조제1항제4호 중 "협정"을 "협정 또는 계약"으로 한다.

제95조제5호 중 "명령"을 "명령(제50조제1항제1호의2·제2호의2·제2호의3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제99조 중 "금지행위(제50조제1항제5호의"를 "금지행위(제50조제1항제1호의2·제2호의2·제2호의3의 행위, 제50조제1항제5호의"로 한다. 제104조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3(정보통신망 이용・제
	<u>공의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</u>
	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
	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
	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
	(이하 "정보통신망 이용 또는
	제공"이라 한다)의 현황 파악을
	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
	<u>있다.</u>
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
	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
	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	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
	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
	한 조사 대상・방법 등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	제50조(금지행위) ①
업자(<u>제9호부터</u> 제11호까지의	<u>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</u>
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	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
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

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금지 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(생 략)<신 설>

<신 설>

3. ~ 11. (생략)

로 한정하고, 제9호부터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 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 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 당하게 부과하는 행위
-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 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 하게 지연·거부하거나 정보 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2의3.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 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 서 이용요금, 계약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
- 3. ~ 11. (현행과 같음)

- ② · ③ (생 략)
-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각 호의 조치를 명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전기통신사업자 간 <u>협정</u>의
 체결·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
 5. ~ 11. (생 략)
 - ② ~ ⑧ (생 략)
- 제9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제52조제1항에 따른 <u>명령</u>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5의2. ~ 8. (생략)

(2) • (3) (연행과 같음)
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협정 또</u>
<u>는 계약</u>
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95조(벌칙)
1. ~ 4. (현행과 같음)
5 <u>명령(제50</u>
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
•제2호의3을 위반한 행위에
대한 명령은 제외한다)
5의2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99조(벌칙) 제50조제1항 각 호 의 금지행위(제50조제1항제5호 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 위는 제외한다)를 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9. ~ 17. (생략)

⑥ (생략)